

군, 읍·면,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의 번 호	1424
---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8. .
제 안 자 : 의장 하용하

1. 주문

- 가. 군정 홍보비의 집행과 관련한 계약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, 일부 공사의 진행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여 시정하고, 대책을 마련하고자, 달성군의회는 ‘군, 읍·면,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나. 활동기간 : 2017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.
- 다. 위원수 :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.
- 라.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소식지, 홍보책자, 차량부착 홍보 등 홍보 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법 위반 등을 조사하여 홍보에 대한 주민피로 등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홍보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,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,
- 나. 송해공원 삼림욕장 허가 문제 및 금굴 체험장 조성에 있어 관련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여 시정함과 아울러,

다.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진행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법률 위배 사항 등을 파악하여 차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함.

3. 근거 규정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제2항
- 나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3조(행정사무조사)

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 행할 수 있다. (개정 2015.4.30)

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 (개정 2015.4.30)

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.

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.

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